

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2-5299호(2022.3.22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6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변경내용		근거법령 및 변경 사유
			당 초	변 경	
(주)오렌지 엔지니어링 (강상문)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3, 101호 (여수동, 성남여수오렌지 카운티)	토목건축 공사업 (10-0478)	영업정지 (‘22.4.25.~’22.6.24.)	영업정지 (‘22.4.25.~’22.6.9.)	건설산업기본법제84조 (대표자의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)